

구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1. 3.
제출자	구미시장

1. 개정이유

전자문서의 사용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 전산화에 부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종전의 종이문서에만 날인하였던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전자문서에 맞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함.
(안 제2조 제6항).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사무관리규정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 (생략) [신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현행과 같음) <u>시장</u> 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